

매일경제



[법률 이야기] 의료사고 분쟁 조정

기사입력 2011.04.06 04:00:0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평소 멀쩡하던 사람이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뜻밖에 사망해 유족과 병원 사이에 긴 법정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더러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 내 그냥 덮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송 기간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평균 2년 2개월이다. 그 사이 유족들에겐 아무런 보상 없이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원이 든다. 그렇다고 언제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료사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분쟁 전문 ‘조정중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분쟁을 재판이 아닌 조정, 중재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있다. 그러나 전자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고 후자는 소액 사건 위주로만 운영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료사고 분쟁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 신속히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인의 배상책임 인정은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결국 과실 유무에 대한 감정 결과가 핵심이다. 이에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과실을 감정하는 전문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조정신청이 있으면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단체 임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60일 이내에 감정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의료사고에서 과실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함께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

의료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의 선택사항이지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 참여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도 둔다. 본래 민사상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과실이 인정되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은 단순한 손해 결과만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조정 중 의료인과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한 때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없다면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특례를 뒀다.

따라서 본 법에 따라 의료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의료인은 적어도 형사처벌 위험은 벗어난다. 다만, 이런 특례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로 불구가 되는 등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경우 '조정 확정 후 피해자가 배상금을 못 받으면 조정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대불(代拂)한 후 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으로 밝혀져 의료인 배상책임이 없는 때에도 조정중재원에서 사고 가족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한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형사처벌 특례는 공포 후 2년이 지나면 시행)이다.

[김기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00호(11.04.0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